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85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‘1MHz급 듀얼소나(Dual SONAR)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4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	법인명(성명)	(주)다음기술단		
	주 소	우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(삼평동, 삼환하이팩스A동) 309호		
	전화번호	031-698-2288	팩스번호	031-698-2290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87호
- 명 칭 : 1MHz급 듀얼소나(Dual SONAR)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
- 기술분야 : 토목 > 교량 > 교량 유지.보수, 토목 > 항만 및 해안 > 항만 시설물 유지.보수
- 신기술의 내용  
이 신기술은 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레임세트,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, 듀얼 소나장비 운영 프로세스(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, 흔들림 보정 기법, 후처리 프로그램)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이다.
- 신기술의 범위  
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레임세트,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, 듀얼 소나장비 운영 프로세스(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, 흔들림 보정 기법, 후처리 프로그램)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2016.04.28. ~ 2029.04.27.(13년)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